

 신안산대학교	<b>민간위탁운영사업관리규정</b>	규정번호 2-1-31 제정일자 2023.07.06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국제교류협력원
---	---------------------	--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민간위탁사업의 수탁 운영에 있어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절차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의 적용은 민간위탁 운영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위탁자: 위·수탁 계약에 의해 위탁을 위임한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
2. 위탁기관: 정부 및 지자체의 위탁기관 선정계획에 의해 설립된 사업운영 기관
3. 수탁기관: 위탁기관 운영 신청기관으로 사업의 관리 책임을 갖는 기관
4. 보조금: 위탁기관 목적사업을 위해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
5. 대응자금: 우리 대학에서 위탁기관의 사업화를 위해 수립하여 지원되는 예산
6. 위·수탁계약서: 위탁기관 선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한 운영 계약서
7. 위탁기간: 위·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위탁운영기간
8. 위탁시설: 위탁운영 시설의 소재지 및 명칭

제4조(위탁사업 신청 주체) 위탁기관 선정기관 참여신청의 주체는 신안산대학교가 된다. 단, 규정 제정일 이전에 신안산대학교로 신청하여 운영 중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신안산대학교로 한다.

제5조(위탁기관 운영 관리) ① 위탁기관의 운영 주체는 수탁기관이 되고 수탁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관이 된다. ② 수탁기관은 위탁자와의 계약에 명시된 사업, 예산, 인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. ③ 수탁기관은 위탁자와 체결한 위·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업무)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계약사항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위·수탁사업 신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2. 기관장 임면에 관한 사항
3. 종사원의 임면 및 근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제출에 관한 사항
5.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
6. 수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7.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8. 기타 위탁기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탁기관장이 승인한 사항

제7조(재정) ① 사업에 관련되는 재정은 대학지원금,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금, 기타 수입(지원)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 ② 사업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회계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사업지침에 따른다.

제8조(회의) 위탁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장 및 관계자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일 이전의 운영 ·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